부 산 고 등 법 원

2000. 9. 29. 판결선고	
2000. 9. 29. 원본영수	인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9나666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99나667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00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00

송달장소 울산 남구 00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용 묵, 조 성 래, 최 용 묵, 박 춘 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강 00 (000000-0000000)

울산 남구 00

변 론 종 결 2000. 8. 25.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1999. 6. 17. 선고 99가합41(본소), 99가합355(반소)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

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 26.부터 2000. 9. 29.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가 1996. 1. 4.경 울산 북구 00 소재 00 주식회사 내 공구실 부근 공장외곽에서 모래를 담은 상자를 들던 중 요추간판 부위에 충격을 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 26.부터 2000. 9. 29.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5등분하여 3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1996. 1. 4.경 울산 북구 00 소재 00 주식회사 내 공구실 부근 공장외곽에서 모래를 담은 상자를 들던 중 요추간판 부위에 충격을 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원심판결 중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6. 1. 4.경 울산 북구 00 소재 00 주식회사 내 공구실 부근 공장외곽에서 모래를 담은 상자를 들던 중 요추간판 부위에 충격을 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00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가 보험자인 별지 기재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는바, 당시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고(3. 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별표 1] 후유장해등급표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별표 1] 후유장해등급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약관 22. ①②), 후유장해의 종류는 [별표 1] 후유장해등급표 6. 등뼈의 장해항목에 ①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②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③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④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구약관'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1996. 1. 4. 21:40경 청구취지 기재 장소에서 결빙된 노면에 뿌릴 모래가 담긴 상자를 들던 중 허리를 다쳐 제3-4 및 4-5 요추간반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97. 4. 14. 레이저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요배부동통 및 우측 대퇴부 및 둔부동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는 현재 제4-5 요추간 추간반 간격의 가벼운 감소, 후방 황색인대의 비후, 제3-4-5 요추간 협착증과 심한 요추 후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제3-4-5 요추간 미

만성 추간반 팽윤과 이에 동반된 경미한 중심성 섬유윤 돌출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후유장해는 일부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과 위 외상이 각각 50%씩 기여하여 생긴 영구적 장해로서 이로 인하여 5% 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다. 구약관은 1998. 7. 1. 개정되면서 [별표 1] 후유장해등급표 등뼈의 장해항목에 ①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② 등뼈에 증증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③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④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⑤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⑥ 고도의 추간반탈출증(지급율 20%) ⑦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지급율 15%), ⑧ 경도의 추간반탈출증(지급율 10%)을 규정하면서 <용어풀이> 항목에서 '고도의 추간반탈출증은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판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은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경도의 추간반탈출증은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신약관'이라고 한다).

라. 원고 회사는 내부지침으로 1998. 7. 1.부터 변경된 약관 중 표준약관 해당사항은 기존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8. 10. 12. 위와 같이 개정된 신약관상의 후유장해등급표의 지급율(갑 제7호증의 2)을 소급 적용받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금 27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먼저 구약관에는 피고가 입은 위 장해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장해는 혼자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 도중에 생긴 것으로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영구장해의 경우에만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장해는 한시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구약관 [별표 1] 후유장해등급표에 의하면 추간반탈출증이 후유장해의 종류로 열거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약관 22. ㉡는 후유장해가 [별표 1] 후유장해등급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여 보험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신약관에서 구약관 [별표 1] 후유장해등급표의 후유장해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추간판탈출증을 등뼈의 후유장해의 종류에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은 구약관이 정한 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원고도 신약관을 기존의 보험계약에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신약관의 [별표 1] 후유장해등급표에 기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 장해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장해는 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되는 영구장해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보험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입은 후유장해가 5%의 노동능력상실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왕증에 의한 기여도가 50%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장해는 신약관에 규정된 경도의 추간반탈출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급율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은 금 450만 원(보험가입금액 금 4,500만 원 × 10%)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산정에 있어 피고의 앞서 본 기왕증을 참작하여 보험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후유장해에 기왕증에 의한 기여도가 50% 정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과 같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신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보험약관의 후유장해등급표상에 기재된 장해의 등급에 따라 지급율을 정하여 놓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실손해를 보험금

으로 지급하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정액보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느냐와는 관계없이 후유장해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금 2,700,000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금 1,800,000원(4,500,000 - 2,700,000)이 남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9. 1. 26.부터 원고가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

하여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앞서 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00. 9. 29.

재판장 판 사 유 원 규 _____

판 사 구 남 수 _____

판 사 박 용 표 _____

보험의 표시

1. 새현대인상해보험

가. 가입일자 : 1994. 3. 4.

나. 증권번호 : 00

다. 피보험자 : 강 00

라. 보험기간 : 1994. 3. 5. - 2004. 3. 5.

마. 후유장애가입금액 : 금25,000,000원

2. 신장기단체상해보험

가. 가입일자 : 1995. 8. 10.

나. 증권번호 : 00

다. 피보험자 : 강 00

라. 보험기간 : 1995. 8. 10. - 1996. 8. 10.

마. 후유장애가입금액 : 금20,000,000원. 끝.